

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국제대학교총장(항공기술교육원장)
(경유)

제목 전문교육기관(국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) 지정서 및 훈련운영기준 등 발급알림

1. 관련근거

- 가. 항공안전법 제4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별표 12
- 나.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730호('19.12.9)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
- 다. 국제대 기획처-00052호('23.5.18), -00056호('23.6.15)
- 라. 항공안전정책과- 2726호('23.5.22), -2956호('23.6.7)

2. 귀 학교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(비행기 및 헬리콥터과정) 지정신청 내용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한 결과, 기준에 적합하여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및 훈련운영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발급하오니, 정해진 요건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1부.
2. 국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훈련운영기준 1부.
3. 국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교육규정 1부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전문임기제 가			항공안전정책	항공안전정책	2023.6.27.
급	홍범표	시설사무관	과장	관	유경수

협조자

시행 항공안전정책과-3383

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11

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4309

팩스번호 044-201-5628

/ hbp133@molit.go.kr

/ 비공개(7)